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 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을 개정하고자 함.

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중앙 또는 지방에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보육활동보호센터를 두고, 보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피해보육교직원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함.(안 제13조 제2항 신설)
- 나. 교육부장관과 시·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각 호로 정하여 구체화함.(안 제20조의9 제1항부터 제2항 개정)
- 다. ① 국가 및 지자체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·진정 등을 조사 하는 경우,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,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며, ② 조사 내용이 다른 영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하고, ③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이 침해되거나 보육활동과 관련된 보육교직원에게 부당한 대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해 엄정하게 조사·처리토록 근거를 마련함.(안 제20조의13조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예정

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어린이집 지도·감독기관(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“관할청”이라 한다)은 보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, 피해보육교직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보육교직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보육활동보육활동보호센터를 둘 수 있다.

제20조의9제1항 전단 중 “다른 보육교직원”을 “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교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정책의 추진 목표 및 전략
2. 보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및 보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·관리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3. 보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
4. 보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,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

5.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20조의9제2항 전단 중 “시·도지사는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”를 “시·도지사는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연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보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·운영
2.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보육교직원 연수 및 홍보
3. 보육활동 침해를 당한 보육교직원(이하 “피해보육교직원”이라 한다)의 치료, 휴가 등 보호 조치
4. 보육활동보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5. 보육활동 분쟁조정 및 법률지원을 위한 공제료 등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
6. 제20조의 16에 따른 보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및 보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
7. 그 밖에 보육활동을 보호하고 보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20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13(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·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육교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

야 하고,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·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른 영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, 당해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활동과 관련하여 보육교직원에게 대한 폭행·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해 엄정하게 조사·처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)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,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. <u><신 설></u> 제20조의9(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·시행 등)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(이하 “시책”이라 한다)을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육활동보호위원회(이하 “보육활동보호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·시행해야 한다. 이 경우 수립한 시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	제13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) ① (좌 동) ② 어린이집 지도·감독기관(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“관할청”이라 한다)은 보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, 피해보육교직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보육교직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보육활동보호센터를 둘 수 있다. 제20조의9(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·시행 등)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육활동보호위원회(이하 “보육활동보호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·시행해야 한다. 이 경우 수립한 시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1. <u>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정책의 추진 목표 및 전략</u> 2. <u>보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실시, 보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·관리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</u> 3. <u>보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</u> 4. <u>보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,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</u> 5. <u>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</u>

② 시·도지사는 법 제18조의3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시책을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시·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(이하 “시·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·시행해야 한다. 이 경우 수립한 시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·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~ ④ (생략)

<신설>

및 관리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시·도지사는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연도의 시책을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시·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(이하 “시·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·시행해야 한다. 이 경우 수립한 시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·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보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·운영
2.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보육교직원 연수 및 홍보
3. 보육활동 침해를 당한 보육교직원(이하 “피해보육교직원”이라 한다)의 치료, 휴가 등 보호 조치
4. 보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5. 보육활동 분쟁조정 및 법률지원을 위한 공제료 등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
6. 제20조의 11에 따른 보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·관리 및 보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실시
7. 그 밖에 보육활동을 보호하고 보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0조의13(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·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육교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,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·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른 영유아 또는 보호자에게

	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, 당해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.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활동과 관련하여 보육교직원에 대한 폭행·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·처리하여야 한다.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3 - 7166